

[]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

[] 주민대표단 구성

동의철회서

[]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
동의자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동의 철회의 내용	(동의자가 자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)	

본인은 이전에 동의했던 ([]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, []주민대표단 구성, []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)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1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 철회자

※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(지장날인)

주민대표단 구성 추진위원회	성명(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
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
	전화번호	

○○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

귀하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동의 철회자 소유권 현황	토지 (총 필지)	소재지	공유여부	면적(㎡)
	건축물 (종류: 상가, 아파트 등)	소재지	허가유무	동 수
	지상권 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)	설정 토지	지상권의 내용	
등기상 건축물 지분 (면적 ㎡)		등기상 대지 지분 (면적 ㎡)		
첨부 서류	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. 다만, 전자서명동의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)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.			

유의사항

- 동의 철회자 소유 토지(건축물)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, 지장으로 간인(間印)을 해야 합니다.
- 이 동의철회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.